

의안번호	2201333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3.
추 계 번호	24F157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74조의2 (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등에 따라 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-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~75% 감면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4조의2 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거나, 사업 시행 결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

- 그러나 해당 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약정 등의 결과로 실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, 동 조항 신설(2021.12.28.)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음
 - 참고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의 현황 및 계획 등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현황 및 계획

	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		혁신지구재생사업	
	주택공급 (사업계획승인 기준)	현물보상 약정	지구지정	현물보상 약정
'21	—	—	—	—
'22	—	—	1곳, 499호	—
'23	4곳, 3,079호	—	—	—
'24	4곳, 9,810호	3곳, 1,451호	1곳, 529호	—
'25	6곳, 7,346호	5곳, 11,438호	—	—
'26	15곳, 26,992호	6곳, 7,346호	2곳, 1,160호	1곳, 499호
'27	13곳, 26,276호	15곳, 26,992호	—	1곳, 529호
'28	—	13곳, 26,276호	—	2곳, 1,160호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